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09. 02. 06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김우진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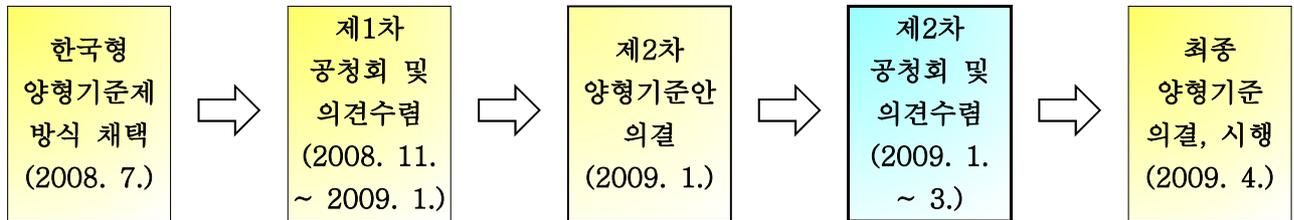
## 양형위원회, 제2차 공청회 개최

- 제2차로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수립
  -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
    - ◆ 횡령·배임범죄 기준 ⇒ 이른바 ‘유전무죄’ 시비 불식
    - ◆ 위증·무고범죄 기준 ⇒ 신뢰받는 법정문화 구현 ⇒ 공판중심주의 기반 구축
  - 유형별로 합리적인 형량범위 설정 ⇒ 양형편차 제거
- 제2차 양형기준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
-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

### ■ 공청회 개요

- 명칭 : ‘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’
  -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 -
- 일시 : 2009. 2. 6.(금) 14:00 ~ 18:40
- 장소 :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417호
- 주최 : 대법원 양형위원회

## ■ 제2차 공청회 개최 의미



### ○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을 반영

- 위원회는 2009. 4. 양형기준제 시행을 목표로 살인죄 등을 비롯한 8개 범 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임
- 선진 양형제도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문위원 연구 성과와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법체계에 적합한 양형기준안 마련
-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제2차 양형기준안을 공개함으로써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
- 공청회 결과는 향후 위원회 심의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

### ○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구현

- 양형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운영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최
-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
- 종국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

## 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

- 제1기 양형위원회(2009. 4. 26.까지)는 우선적으로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을 설정
  - 살인범죄 : 범죄의 중대성 및 양형기준의 상징성 고려
  - 뇌물범죄, 성범죄 : 높은 사회적 관심 반영
  - 강도범죄 :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범죄인 점 고려
  - 횡령·배임범죄 :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반영
  - 위증·무고범죄 : 개정 형소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필요 고려
  
- 공청회 회부 대상 양형기준안
  - 제2차 공청회 :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  
[ 제1차 공청회 : 살인, 뇌물, 성범죄(2008. 11. 24.) ]

## ■ 양형기준안의 특징

- 범죄별 유형구분을 통한 합리적인 형량범위 제시
  - 개별 범죄의 특성을 살려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
    - 예컨대, 횡령·배임범죄의 경우 횡령·배임금액(이득액)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15개의 처단형 범위를 제시
  - 구체적인 형량범위 설정방법은, 원칙적으로 양형실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산출된 형량범위를 토대로 하되,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규범적 조정을 가미하는 방식 채택

○ 범죄별로 구체적 양형인자와 평가원칙을 제시

- 범죄별 특성을 반영하여 법관이 양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를 엄선한 후 경중에 따라 특별/일반인자, 가중/감경인자로 구분하여 제시
- 평가원칙에 있어, 행위자에 관련된 요소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를 중하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법의 대원칙인 “행위책임의 원칙”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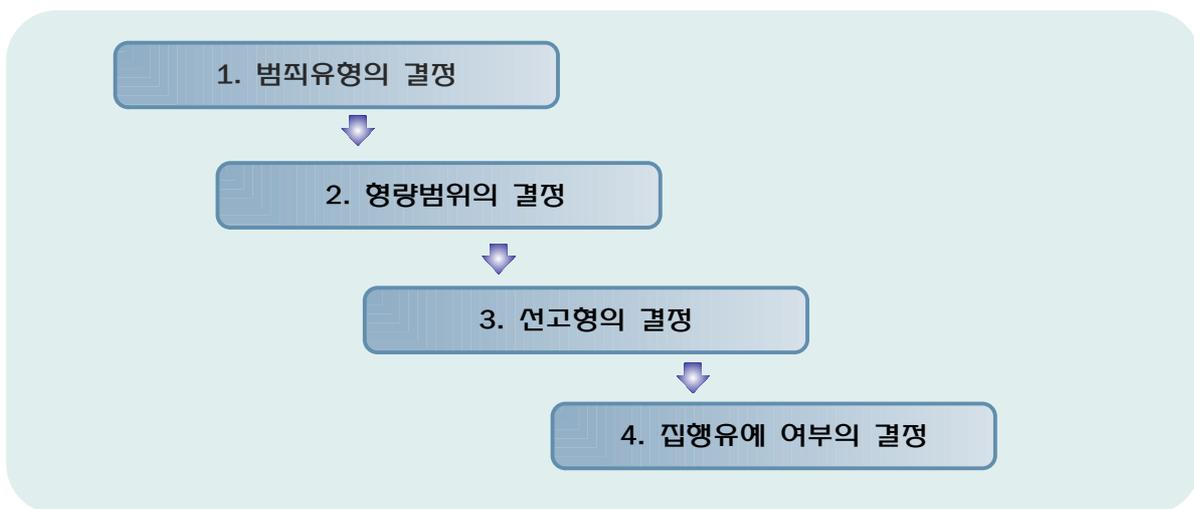
○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

- 집행유예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편차 시비 해소 필요
- 집행유예 결정 시 부정적/긍정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참작사유 분류 및 제한

○ 종합 :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고유한 양형기준 설정

- 미국 연방식, 영국식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한국형 양형기준 모델의 창출

◆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◆



## ■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실무 개선 효과

### ○ 엄정한 양형의 구현

- 대상범죄에 관해 종전 법원의 양형실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 구현
-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에 관한 엄격한 심사체제 도입

### ○ 이른바, '유전무죄' 시비 불식

- 횡령·배임범죄에 관하여, 지배주주·경영인 등에 대하여도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, 이른바 '유전무죄' 시비와 오해를 불식
-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 구현

### ○ 신뢰받는 재판문화 구현

- 위증·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, 국민참여재판 및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전제에 해당되는 신뢰받는 법정문화를 창달
- 사법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한 토대 구축

### ○ 양형의 일관성과 적정성 제고

-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형량범위를 제시하여 양형의 일관성 제고
- 범죄 및 범죄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양형인자를 선정하여 구체적 사건에 적합한 양형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양형의 적정성 도모

○ 양형심리절차의 충실화 도모

- 양형인자의 존부와 정도에 집중된 당사자의 공방을 유도하여 양형심리의 충실화 도모

## ■ 강도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

○ 범행수법 · 범행결과 등을 기준으로 유형구분

- 대표적 강력범죄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일관된 유형분류 원칙 설정
-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⇒ 별도의 기준표 제시
- 같은 유형 내에서, 범행수법이 불량한 특수강도를 가중유형으로 처리하여 일반강도에 비해 높은 형량범위를 부여
- 상습 · 누범강도 ⇒ 별도의 기준표 제시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상습 · 누범강도에 대한 가중 처벌
  -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
  - 감경영역(권고형량 5년 ~ 8년)에서도 원칙적인 실형 권고
- 강도살인범에 대한 중형 권고
  -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중한 살인유형보다 더 가중된 형량 권고
  - 기본 영역에서도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, 특히 가중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만을 권고

○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

-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: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, 금융기관 강도, 5인 이상 공동 범행 등

-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: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·협박, 자수,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(다만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합의 제외) 등
-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(살인, 뇌물,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동일)
  - 행위 인자 > 행위자 인자
  - 피해 회복 관련 요소는 정책적으로 중하게 고려
  - 성격이 유사한 인자의 개수가 같은 경우 동등 처리

○ 집행유예 기준 제시

-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
  - 긍정적 고려 요소 : 형사처벌 전력 없음, 현저한 개선의 정 등
  - 부정적 고려 요소 : 중한 상해, 2회 이상 동종 전과, 위험한 물건 사용 등
-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(살인, 뇌물범죄 양형기준안과 동일)
  - 형종 및 형량 기준과는 다소 다른 평가원칙
  - '실형' 또는 '집행유예'의 택일적 선택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 참작사유의 개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권고적 지침 설정

## ■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

○ 횡령·배임금액(이득액)을 기준으로 유형 구분

- 이득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 반영
- 횡령·배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서 적정한 양형 도출이 가능하도록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엄선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
- 기업범죄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엄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종전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을 모색

- 50억 원 이상 횡령·배임의 경우 기본영역에서 원칙적인 실행 권고
- 특별법을 통해 법정형을 가중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

### ○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

-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: 대량의 피해자(근로자, 주주, 채권자 등을 포함) 양산,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,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
-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: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,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
-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

### ○ 집행유예 기준 제시

-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
  - 긍정적 고려 요소 :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
  - 부정적 고려 요소 :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,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등
-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

## ■ 위증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

### ○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유형 구분

- 위증과 모해 위증으로 유형분류
- 법정형을 가중한 입법자의 의사 존중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문화의 창달을 도모

○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

-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: 경제적 대가의 수수, 위증이 신빙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
-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: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, 자수·자백 등
-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

○ 집행유예 기준 제시

-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
  - 긍정적 고려 요소 : 소극가담, 우발적 범행 등
  - 부정적 고려 요소 : 경제적 대가의 수수,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등
-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

## ■ 무고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

○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유형 구분

-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유형분류
- 법정형을 가중한 입법자의 의사 존중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무분별한 고소·고발을 억제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

○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

-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: 중한 피해결과 야기,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등
-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: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, 자수·자백 등
-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

○ 집행유예 기준 제시

-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
  - 긍정적 고려 요소 :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
  - 부정적 고려 요소 : 2회 이상 동종 전과 등
-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

## ■ 위원회 경과

### ○ 설립

-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07. 1. 26.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. 4. 27. 출범

### ○ 위원회 현황

#### ● 위원회

-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은 법관 위원 4명, 검사 위원 2명, 변호사 위원 2명, 교수 위원 2명  
과 기타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

#### ● 전문위원

-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업무 수행
- 법관 3명(수석전문위원 1명 포함), 검사 2명, 변호사 3명, 교수 및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

#### ● 운영지원단

-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
- 운영지원단에 기획운영과, 자료조사과, 통계분석과 설치

### ○ 회의 개최

#### ● 위원회 회의

- 2007. 5. 2.부터 2009. 1. 20.까지 정기회의 14회, 임시회의 2회 개최

#### ● 전문위원 전체회의

- 2007. 7. 18.부터 2009. 1. 12.까지 정기회의 14회, 임시회의 3회 개최

## ○ 주요 활동

### ● 외국 양형제도 연구

- 영국, 미국 연방·각주, 뉴질랜드, 오스트레일리아, 독일, 일본 등

### ● 양형자료조사 실시

- 양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된 약 4만 3,000건의 형사사건을 조사
- 유례 없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양형자료조사 수행

### ● 설문조사 실시

- 일반인과 법조계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
- 일반인 1,000명, 전문가 2,29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전자우편방식 조사

### ●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 결정(2008. 7.)

-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주의 범위 ⇒ 개별적 양형기준
- 양형인자의 계량화 방식 및 정도 ⇒ 유형분류 + 양형인자 질적 구분
- 양형기준 설정 순서 ⇒ 점진적 설정방안
- 최초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: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

### ● 양형기준안 제1차 공청회(2008. 11. 24.)

- 대상 : 살인, 뇌물, 성범죄 양형기준안
- 국가기관 및 학회,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(2009. 1.)

## ○ 향후 일정

### ● 2009. 1. ~ 2009. 3. 제2차 공청회 및 의견조회

### ● 2009. 2. ~ 3.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 및 양형기준 적용효과 분석

### ● 2009. 4. 양형기준 확정 의결, 시행

(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)